

# 레바논(Lebanon)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63년(사회보장)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## 3 적용대상

- 제조업, 상업 및 농업부문 근로자
- 적용제외 : 자영자, 임시 농업근로자, 레바논과 상호협정이 되어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 (팔레스타인인 근로자 제외), 해외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자
- 공공부문 근로자 및 교사를 위한 특별제도

## 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없음;
- 자영자 : 해당 없음;
- 사용자 : 월 임금지급총액의 8.5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 소득 혹은 상한 소득 없음
- 정 부 : 없음

##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급여
  - 60세; 근로기간이 최소 20년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; 또는 여성의 경우 혼인일자부터 최초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가능
  - 퇴직요건 필수
  - 부분급여 : 가입자가 영구 퇴직하였으며 근로기간이 최소 20년인 경우 가능
  - 연기급여 : 급여는 64세까지 연기 가능
- 장애급여
  - 통상 근로능력을 50% 이상 상실한 자 또는 평상시 직종 혹은 다른 유사한 직종에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함
  - 의료위원회가 근로능력상실을 평가
- 유족급여
  - 사망자의 보험가입 고용기간이 최소 6년 이상이었으며 사망 당시 보험가입 고용상태였어야 함
  - 수급자격유족은 미망인(홀아비), 고아(나이제한 없음), 부모(나이제한 없음), 형제자매를 포함함
  - 장제비 : 장례식을 지불한 사람에게 지급

## 6

###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## ○ 노령급여

- {가입자의 최근 월 소득(또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가입자의 지난 12개월 간 월 평균소득) × 최대 20년까지의 근로연수} + {가입자의 지난 월 소득의 절반 × 20년 초과 근로연수}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일부급여 : 1~5년 근무한 근로자는 산정된 노령급여의 50%; 5~10년 근무한 근로자는 65%; 10~15년 근무한 근로자는 75%; 15년 초과 20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85%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
#### ○ 장애급여

- <가입자의 최근 월 소득 × 근로연수>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- 최저 장애급여는 가입자의 장애 발생 전 최근 월 소득의 20개월 치임

#### ○ 유족급여

- 생존하는 부모가 없는 경우, <사망자 최근 월 소득의 100% × 근로연수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미망인(홀아비)와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에게 지급됨(미망인(홀아비)는 25%, 수급자격이 있는 고아들은 75%가 균등하게 분배됨) 생존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<사망자 최근 월 소득의 10% × 근로연수>에 해당하는 금액이 생존하는 부모에게 지급됨; 잔여 90%는 미망인(홀아비) 그리고 고아들에게 지급됨(각각 25%, 75%)
- 수급자격이 있는 미망인(홀아비) 또는 고아가 없는 경우, <사망자 지난 월 소득의 50% × 근로연수>에 해당하는 금액이 생존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며 50%는 형제자매에게 지급됨(생존하는 부모의 부재 시 100%가 형제자매에게 지급됨)
- 최저유족급여는 사망자의 지난월소득보다 6배 더 큼
- 장제비 : 법적 월 최저임금의 150%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
  - 법적 월 최저 임금액 : 675,000 pounds

## 7

### 관리운영기관

#### ○ 노동부(Ministry of Labor)

- 전반적 감독
- <https://www.labor.gov.lb>

#### ○ 국가사회보장금고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
- 구청을 통해 노.사.정 위원회와 위원장의 관리 하에 제도를 관리하고 보험료 징수
- <https://www.cnss.gov.lb>

<2018년 ISSA 자료>